

행정안전부

시정요구

제 목 별정직과 일반직 복수직렬 책정 부적정

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 동구, 부산 수영구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고, 동 규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을 복수로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 규정 및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부산 동구, 부산 수영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서인력에 대하여 일반직과 별정직을 복수로 부여하는 등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을 위반하였다.

< 별정직·일반직 복수직렬 책정 부적정 >

지자체명	부서명	직급	담당사무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별정 7급	• 의장 비서 업무 수행
부산 동구	의회사무과	행정·별정 8급	• 의장 비서 업무 수행
부산 수영구	행정지원과	행정·별정 6급	• 구청장 의전 및 부속실 관리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 부산 동구청장, 부산 수영구청장께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렬 정원을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등 법령에 부합토록 조정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및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 정 안 전 부

개선권고

제 목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효율화 도모 노력 미흡

기 관 명 부산 서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부산 기장군

내 용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효율화 및 주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쇠퇴기능에서 핵심 및 신규사업 기능 등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 기능·인력 재배치 기준 >

① (기능) 지원기능, 쇠퇴기능에서 핵심 및 신규사업 기능*으로 재배치

* 예시 : 도시개발·산단 조성 등 신규 행정수요 급증 분야, 지역별 특화 역점과제·국제행사 등
지역현안 분야, 주요 국정과제 또는 법령에 따른 신규 인력소요 분야

② (현장) 본청 또는 감독부서에서 읍면동, 일선 서비스 현장으로 재배치

③ (서비스 편차) 인력 부족으로 안전·복지 등 행정 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저하 되어있는 현업부서 또는 읍면동으로 재배치

④ (근로시간) 공직내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적정 배치

지방자치단체는 동 지침에 따라, 일반직 정원의 1% 이상을 재배치 대상으로 하되, 인력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재배치를 실시하여야 하나,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속해서 2년 이상 목표치 미만 실적을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 기능·인력 재배치 미흡 사례 >

연번	지자체명	재배치 달성을 %)			비고
		'19년	'20년	'21년	
1	부산 서구	-	-	-	2년이상 1%미만
2	부산 영도구	1.15	0.32	0.31	"
3	부산 동래구	-	-	0.14	"
4	부산 남구	-	-	-	"
5	부산 사하구	0.46	0.23	0.78	"
6	부산 강서구	0.50	-	-	"
7	부산 수영구	0.51	0.17	-	"
8	부산 사상구	0.28	0.14	0.81	"
9	부산 기장군	-	-	-	"

조치할 사항

부산 서구청장, 부산 영도구청장, 부산 동래구청장, 부산 남구청장, 부산 사하구 청장, 부산 강서구청장, 부산 수영구청장, 부산 사상구청장, 부산 기장군수께서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쇠퇴 분야의 인력을 일선 현장 및 신규 핵심사업 분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부산광역시 및 관할 구·군 소속 위원회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부산광역시,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강서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부산 기장군

내 용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15.9월~)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16~'22년)을 통해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대한 정비방안을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세부 정비방안으로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을 자체 검토 후 실효성, 안건 특성 등에 따라 위원회 폐지, 통폐합, 협의체 전환 등을 실시할 것을 안내하였다.

【 위원회 정비 기준 】

1. 폐지 : 목적 달성 등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
2. 통폐합 : 동일 법령 또는 동일 부처 소관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3. 존속기한 설정 : 영구 존속사유가 없는 경우 존속기한 명시(5년 이내)
4. 협의체 전환 :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내부 행정에 관한 심의 위원회
5. 비상설화 :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및 산하 구·군에 대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법령상 임의 설치가 가능하거나 조례 등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 존속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기와 같이 정비하여야 하나, 일부 위원회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조례·규칙 개정 등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위반사항 : 불임)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 부산 중구청장, 부산 서구청장, 부산 동구청장, 부산 영도구청장, 부산 동래구청장, 부산 남구청장, 부산 해운대구청장, 부산 사하구청장, 부산 금정구청장, 부산 강서구청장, 부산 연제구청장, 부산 수영구청장, 부산 사상구청장, 부산 기장군수께서는

상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 등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 현황>

지자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부산광역시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			19
	유통분쟁조정위원회	○			11
	산림교육지원위원회		○		11
부산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			10
부산 서구	도시재생위원회	○			16
부산 동구	관광진흥위원회		○		11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20
	도시재생위원회	○			24
부산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			11
	영도구지하수관리위원회	○			9
부산 동래구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		15
부산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			11
부산 해운대구	에너지위원회	○			15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		15
	지하수관리위원회	○			0
	외국인주민지원시책 자문위원회		○		13
부산 사하구	안전관리자문단	○			20
	안전문화운동추진사하구협의회	○			23
부산 금정구	지역치안협의회	○			23
	청년문화활성화지원협의회		○		10
	유통분쟁조정위원회	○			11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18
부산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		25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			11
	지하수관리위원회	○			8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25
	현혈추진협의회		○		8
부산 연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			11
	식생활교육위원회	○			18
	양성평등위원회		○		10
부산 수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			13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	○			9
	문화예술위원회		○		15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20
	편집위원회		○		15
부산 사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			10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		13
부산 기장군	축제심의위원회		○		11
	유통분쟁조정위원회	○			11
	주민투표청구심의회	○			8